



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3 - 118호

# 2023년 제14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(장애인 구분 모집)

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3년 12월 13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

# 1. 채용분야

구분	임용분야 〈근무부서〉	임용직급	인원	임기	근무 시간	담 당 업 무
[장	애인 구분 모집]					
일 반	<b>장애인일자리 운영 요원</b> 〈장애인자립지원과〉 <mark>[제14회 재공고]</mark>	일반임기제 행정7급	1명	1년	주40 시간	○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(국비 지원/ 직접, 도비 지원/직접) 추진 ○ 장애인일자리사업 제도 개선 및 현안 대응
임기제	계약업무 지원요원 〈회계담당관〉 (의정부시 소재) [제14회 재공고]	일반임기제 행정7급	1명	1년	주40 시간	○ 공사, 용역(기술, 학술, 일반) 등 계약 ○ 관급자재 및 물품 구입 등
	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 〈노동권익과〉 [제14회 재공고]	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	1명	1년	주35 시간	○ 경기도 노동권익센터(남부센터)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업무 ○ 남부권역 노동법률 교육 지원
시 간 선택제 임기제	언론홍보 콘텐츠 기획 • 제작 요원 〈언론협력담당관〉 [제14회 재공고]	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	1명	1년	주35 시간	<ul> <li>○ 언론보도용 웹콘텐츠(카드뉴스, 인포 그래픽 등) 디자인 기획・제작</li> <li>○ 언론광고물(인터넷, 지면광고) 디자인 기획・제작</li> <li>○ 맞춤형 도정 홍보 콘셉트 및 홍보 메시지 기획</li> </ul>



구분	임용분야 〈근무부서〉	임용직급	인원	임기	근무 시간	담 당 업 무
	<b>국선대리인 지원요원</b> 〈행정심판담당관〉 <mark>[제14회 재공고]</mark>	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	1명	1년	주35 시간	<ul><li>○ 국선대리인 신청 사건 검토 및 처리</li><li>○ 공개용 재결서 작성 및 게시 관리</li><li>○ 기록물 관리</li></ul>
시 간 선택제 임기제	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 〈장애인복지과〉 [제14회 재공고]	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	1명	1년	주35 시간	<ul> <li>○ 장애인복지과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업무관리</li> <li>○ 법인 및 민간단체 대표자 변경, 주소지 변경, 목적사업 변경 등 정관변경 처리</li> <li>○ 신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허가 담당부서 의견제출</li> <li>○ 법인 및 민간단체 민원처리(국민 신문고, 정보공개신청서)</li> </ul>
	<b>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</b> 〈인사과〉 <b>[제14회 재공고]</b>	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1명	1년	주35 시간	<ul> <li>○ 전기, 기계, 소방, 건축 등 온누리관 (채용시설) 시설・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</li> <li>○ 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구매, 공사 발주 및 감독 등 행정업무</li> <li>○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</li> </ul>

#### ◈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#### ◈ 재공고 사유

- 응시자 없음: 계약업무 지원요원,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, 언론홍보 콘텐츠 기획·제작 요원, 국선대리인 지원요원,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, 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음 : 장애인일자리 운영 요원
- ※「2023년 제14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」에서 위 재공고 분야에 응시한 사람은 재응시 불필요





# 2. 법령근거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제25조의5, 제31조
- 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
- 다.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)
- 라. 「(지방)공무원 보수규정」및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마. 「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」제16조, 별표 6의3

# **3. 응시자격**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#### 가.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「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O 주소지·성별·연령 제한 없음
- O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
####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
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・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-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-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「초·중등교육법」,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-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· 단체





## 나. 응시요건 (다음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)

※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(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17조 제5항)

<b>임용분야</b> 〈근무부서〉임용직급	자 격 기 준
[장애인 구분 모집]	
<b>장애인일자리 운영 요원</b> 〈장애인자립지원과〉 일반임기제 행정7급	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○ 관련분야 경력: 장애인복지, 일자리사업 관련 근무 경력  ○ 추가 필수지격: 장애인재활상담사 및 운전면허 제2종 보통 이상 지격을 모두 소지한 자
<b>계약업무 지원요원</b> 〈회계담당관〉 일반임기제 행정7급	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 경력: 계약 관련 근무경력
<b>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</b> 〈노동권익과〉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	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〇 관련분야 경력: 노동법률 상담·자문, 권리구제 등 관련 근무경력 〇 추가 필수자격: 「공인노무사법」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
<b>언론홍보 콘텐츠 기획 • 제작 요원</b> 〈언론협력담당관〉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	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〇 관련분야 경력: 디지털콘텐츠 기획·제작 및 언론, 홍보, 대외협력 관련 근무 경력



<b>임용분야</b> 〈근무부서〉임용직급	자 격 기 준
<b>국선대리인 지원요원</b> 〈행정심판담당관〉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	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 경력: 법무, 행정소송, 행정심판 관련 근무경력
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 〈장애인복지과〉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	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 경력: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업무 경력
<b>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</b> 〈인사과〉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	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, 1.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관련분야 경력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, 민간(사기업 포함) 등에서의 시설관리 관련 근무경력 ○ 추가 필수자격: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- (기능장) 전기 - (기사) 전기, 전기공사, 건축설비, 건축, 소방설비(전기분야, 기계분야) - (산업기사) 전기, 전기공사, 기계정비, 건축설비, 건축, 소방설비(전기분야, 기계분야) - (기능사) 전기, 기계정비

- ※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(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  -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, **근무기간 산정 시** 시간할 계산됨
- ※ 상위 계급(임용등급)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(임용등급)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(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및 「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」)





## 4. 시험방법

#### 가. 1차 시험: 서류전형 (자격·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)

- O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O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, 경력기간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
- O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(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55조 제4항)
  - ※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

#### 나. 2차 시험: 면접시험(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)

-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전문지식 및 공무워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#### ◈ 불합격기준

-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"하"로 평정
-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"하"로 평정
-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
- ◆ 추가합격자 결정 :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★ 재공고: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함 (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





# 5. 원서접수

**가. 접수기간** : 2023. 12. 26(화) ~ 12. 28.(목) / 3일간

※ 응시수수료: 5급(호), 가급: 1만원 / 6·7급(호), 나·다급: 7천원 / 8·9급(호), 라·마급: 5천원

- 방문접수
  - 시간 : 09:00 ~ 18:00 [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제외]
  - 응시수수료 신용카드(체크카드 가능)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
  -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(방문접수만 해당)
  -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
- 등기우편 접수(택배, 퀵서비스 접수 불가) ※ 가급적 빠른 등기우편으로 송부
  -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  -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<u>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</u> ※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불가. 우체국 우편통상환 구입은 16:30 까지 가능함
  - 우편봉투 겉면에 <u>'2023년 제14회 재공고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'</u> 표기
- 다.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처 : 인사과 인재채용팀(경기도청 구청사 소재)
  - 주소 : (우편번호 16444)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, 경기도청 구청사 인재채용동 2층 인재채용팀
    - ※ '경기도청 광교 신청사'가 아닌 '경기도청 구청사(수원시 팔달구 소재)'임에 유의





# 6. 시험일정

구 분	기 간
원서 접수	2023. 12. 26.(화) ~ 12. 28.(목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	2024. 1. 5.(금) 전·후
면접시험	2024. 1. 9.(화) ~ 1. 12.(금)
최종합격자 발표	2024. 1. 17.(수) 전·후
임용예정시기	2024. 2월 중

- ◆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, 최종합격자 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
   ※ https://www.gg.go.kr 접속 → 뉴스 → 공무원 임용시험 → 임기제・개방형 직위 → 합격자 발표
- ◈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



# 7. 보수수준

- O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13의 5회)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
- O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

임용예정 분야	임용직급	상한액	하한액
장애인일자리 운영 요원	일반임기제 행정7급	64,776천원	46,006천원
계약업무 지원요원	일반임기제 행정7급	64,776천원	46,006천원
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	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	69,350천원	46,210천원
언론홍보 콘텐츠 기획・제작 요원	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	56,679천원	40,256천원
국선대리인 지원요원	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	56,679천원	40,256천원
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	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	56,679천원	40,256천원
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	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	49,724천원	35,470천원

- ※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제35조 제3항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
- ※「고용보험법」제10조 제1항 제3호 및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



8. 제출서류 ※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, 클립, 플래그(띠지) 등 사용금지, 양면인쇄 금지

구 분	내 용	비고
<b>1. 응시원서 1부</b> (별지서식 제1호)	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*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- (방문접수) 인재채용팀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원서제출 - (우편접수) 우편통상환 구입·동봉	
2. 이력서 1부(별지서식 제2호)	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(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)	필수
3. 자기소개서 1부(별지서식 제3호)	A4용지 3매 이내	필수
4. <b>직무수행계획서 1부</b> (별지서식 제4호)	A4용지 3매 이내	필수
5. <b>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</b> (별지서식 제5호)	해당 사항만 작성(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)	필수
6. <b>서류전형 지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</b> (별지서식 제6호)	응시분이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(해당 없는 항목 삭제)	필수
7. 동의서 각1부 (별지서식 제7호)	<ul><li>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</li><li>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</li><li>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전동의서 1부 (또는 초본 제출-병역사항 표기)</li></ul>	필수
8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	<ul> <li>국민건강보험공단(https://www.nhis.or.kr)에서 발급</li> <li>※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</li> <li>이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</li> </ul>	필수
9.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	<ul><li>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</li><li>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</li></ul>	필수
10. 경력증명서	<ul> <li>○ 담당업무,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       <ul> <li>발행기관 직인,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</li> </ul> </li> <li>○ 시간제 근무, 비상근직,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※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(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시 2년 인정)</li> <li>○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</li> <li>○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</li> <li>※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</li> </ul>	된 된



구	분	내 용	비고
11. 기타 증빙서류		○ 추가 필수자격의 경우 해당 서류 반드시 제출 ○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○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(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) ○ 관련분야 연구실적(논문, 저서 등) - 연구논문 등의 경우 별지서식 제5호에 따라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○ 관련분야 수상실적(기관명, 수상자(단체 불인정), 공적 등 기재된 것만 인정) ○ 관련전공 증명서(추가필수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함)	해당자 제출
12. 추가 제출서류 (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 대상)		○ 장애인증명서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장애인증명서 제출 불필요 ○ 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서(별지서식 제8호) ※ 편의지원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 및 방법 응시자 개별 통보 예정	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
○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,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○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반드시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○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			본 지참

# 9. 기타 유의사항

- O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, 원서 접수기간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.
-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 응시 불가함.
- 경력사항의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담당 업무와 근무 기간,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, 재직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재직증명서는 경력사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.



- O 응시서류의 누락, 미비, 기재착오,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.
-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함.
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- O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며,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접수 가능함.
-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기 바람. 면접은 응시번호 순으로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장시간 대기 예상됨.
- O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림.
- 응시자의 편의 지원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시 면접시험 편의지원 신청서 (응시원서 별지서식 제8호)를 제출할 수 있으며, 편의지원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님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공고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경력·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.





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정,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기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「공무원연금법」이나 「군인연금법」, 「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」을 적용받는 공무원·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.(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제1항)
-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인사과 인재채용팀 (031-8008-4063, 4064, 4045)

- 직무내용 관련 문의 : 아래 표 참조

임용예정 분야	직무관련 주무부서	연락처
장애인일자리 운영 요원	장애인자립지원과	031-8008-5142
계약업무 지원요원	회계담당관	031-8030-2242
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	노동권익과	031-8030-4632
언론홍보 콘텐츠 기획・제작 요원	언론협력담당관	031-8008-2713
국선대리인 지원요원	행정심판담당관	031-8008-2163
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	장애인복지과	031-8008-4364
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	인사과	031-8008-4047